

[별지 제70호서식]

(앞 쪽)

제 호 야생동·식물보호원증	사 진 (25mm×30mm)
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은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·식물보호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[인]	

81mm×55mm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(뒤 쪽)

특 기 사 항

1. 본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.
 - 가.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의 보호·번식에 관한 주민의 지도·계몽
 - 나.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관리의 보조
 - 다.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
 - 라. 야생동·식물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
 - 마. 생태계교란야생동·식물, 유해야생동물, 관리동물 등의 관리
 - 바.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
2. 불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